



〈 수시 공시 〉

2018. 8. 30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자본시장법 제 19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3 조 제 4 호)에 의거하여,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설정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이 해지됨을 안내드립니다.

1. 대상 집합투자기구

펀드명	
1	신영더블플러스 10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
2	신영 VIP 밸류 60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

2. 해지 사유 : 소규모펀드 임의 해지(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)

3. 해지 일자 : 2018년 8월 30일

4.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, 한국금융투자협회 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www.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